

##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년 3월 31일(화) 오전 09시
2. 장 소 :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, 3동 4층
3. 회의 목적사항
  - 가. 보고사항
    - 감사보고
    - 영업보고
   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 - 나. 부의안건
    - 제1호 의안 : 제24기 (연결/별도)재무제표 승인의 건 [별첨1. 재무제표 승인의 건]
    -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[별첨2. 정관 일부 변경의 건]
      - 제2-1호 의안 : 주식 양도제한 폐지의 건 [제16조 폐지의 건]
      - 제2-2호 의안 : 상법개정안 및 이사의 수 변경의 건 [제32조, 35조, 39조 개정의 건]
      - 제2-4호 의안 : 감사제도 변경의 건 [제41조, 47~52조 개정 및 신설의 건]
   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[별첨3. 사내이사 선임의 건]
      - 제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이하춘 선임의 건
      - 제 3-2호 의안 : 사내이사 이종보 선임의 건
    - 제4호 의안 : 감사 윤성진 선임의 건 [별첨4. 감사 선임의 건]
    - 제5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[별첨5.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]
    - 제6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[별첨6.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]
4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  
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  
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  
사 할 수 있습니다.
5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
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  
(상법 제368조의4)를 도입하였습니다.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 
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  - 가.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: 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  - 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: 2026년 3월 21일 오전9시~ 2026년 3월30일 오후 5시
  - 다.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)
  - 라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

별로 의결권행사

마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)

## 5. 기타사항

### (1) 직접행사

- 주총참석장(주주총회장 비치), 본인 신분증  
(단,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,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(성명,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)를 제시하여야 함)

### (2) 대리행사

- 주총참석장(주주총회장 비치)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), 대리인의 신분증  
(단,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,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성명,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)

2026년 3월 20일

주식회사 이아이다  
대표이사 신정희 (직인생략)

[별첨 1. 재무제표 승인의 건]

1. 요약(별도)재무제표

(단위: 원)

구분	제 24 기 (2025)	제 23 기 (2024)
자산총계	246,469,857,489	210,157,927,650
부채총계	55,352,046,966	32,991,951,325
자본총계	191,117,810,523	177,165,976,325
자본금	54,702,589,200	50,876,872,000
매출액	186,637,853,782	148,717,631,492
영업이익(손실)	-2,988,986,533	-2,242,927,219
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(손실)	-4,742,753,285	-16,521,930,078
당기순이익(손실)	-4,764,875,925	-17,078,262,080

2. 요약(연결)재무제표

(단위: 원)

구분	제 24 기 (2025)	제 23 기 (2024)
자산총계	334,645,757,871	301,066,402,104
부채총계	115,255,447,404	101,065,029,501
자본총계	219,390,310,467	200,001,372,603
자본금	54,702,589,200	50,876,872,000
매출액	200,089,721,310	252,015,755,334
영업이익(손실)	-4,184,906,401	2,798,430,942
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(손실)	-6,891,653,185	-8,872,112,848
당기순이익(손실)	-6,913,396,981	-11,072,392,876

[별첨 2. 정관일부 변경의 건]

현행	변경	비고
<p><b>제 16 조 (주식의 양도제한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주주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식 양도의 승인을 거절하지 못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주식양도의 승인 여부는 이사회결의로 한다.</p>	(삭제)	2-1 호 안 건
<p><b>제 32 조 (의결권의 대리 행사)</b>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32 조 (의결권의 대리 행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2-2 호 의 안

<p><b>제 35 조 (이사의 수)</b>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<b>제 35 조 (이사의 수)</b>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한다. 다만,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.</p>	
<p><b>제 39 조 (이사의 의무)</b>         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39 조 (이사의 의무)</b>         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b>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여</b>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<b>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여</b>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③ (좌동)         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<b>감사</b>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
<p><b>제 41 조(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)</b>        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       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④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41 조(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)</b>        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한다.        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④이사 및 <b>감사</b>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2-3 호 의 안
<p><b>제 47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        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       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       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0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       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       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</p>	<p><b>제 47 조 (감사의 수)</b>          ①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. 단,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,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   제 48 조(감사의 선임)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        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       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        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</p>	

<p>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.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 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 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 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 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 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 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 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⑨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 여야 한다.</p> <p>제 48 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 ① 감 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 사한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 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 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</p> <p>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 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</p>	<p>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제 49 조(감사의 임기와 보선) ①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</p> <p>②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 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 47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 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50 조(감사의 직무와 의무)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/p> <p>②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(소집권자 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④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 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.</p> <p>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 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를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⑦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9 조 제 3 항 및 제 42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 51 조 (감사록) 감사는 감사에 관하 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 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 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 52 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감사 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40 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 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.</p>	
---	--	--

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 제 49 조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	
--	--	--

[별첨 3. 사내이사 선임의 건]

성명	생년월일	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	비고
이하춘	1953.09.16	전) 진흥기업 재무이사 전) 대우텔레텍 재무이사 전) (주)지이 사장 현) 이화전기공업(주) 사외이사	이사회	-	-
이종보	1970.05.18	전)대림그룹 재경팀장 전)유니언제이 경영본부장 현)이트론(주) 대표이사	이사회	-	

[별첨 4. 감사 선임의 건]

성명	생년월일	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	비고
윤성진	1961.02.27	전)삼성전자 경영기획 전)컴퓨터프라자 대표이사 현) 이트론(주) 사내이사	이사회	-	-

[별첨 5.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]

구분	전기	당기
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	5(2)	3(0)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10 억원	10 억원

[별첨 6.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]

구분	전기	당기
감사의 수	-	1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-	1 억원